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2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부승찬 · 장철민 · 김한규
이재강 · 진선미 · 김준형
김준혁 · 박지혜 · 권철승
김영환 · 김남근 · 안태준
안도걸 · 소병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산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 신설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를 “[제24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생 략)</p> <p><u><신 설></u></p>	<p>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u>----- ----- ----- -----[제24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제</p>

4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